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첫 기소 나왔지만...“형식적 안전관리로 처벌 피해갈 것” 우려

✎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2.06.27 17:58

**“대흥알엔티, 사실상 파행상태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으로 기소 피해”  
민주노총 경남본부, “검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해야”**

두성산업 대표이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혐의로는 최초 기소됐다. 두성산업과 같은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안전관리체계’가 존재했다는 이유로 대흥알엔티가 무혐의 처분받은 것을 두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형식적 안전관리체계만 있어도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창원지검은 27일 창원지검 에어컨 부품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엔티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에 무혐의 처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대흥알엔티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 3 검찰 사건처리

### ○ B사 대표 나○○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제해예방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사실 인정되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
- 다만, 작업장에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한 잘못으로 근로자들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는 인정되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창원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세척제 제조업체인 ‘유성케미칼’의 세척제를 납품받아 작업한 창원의 두성산업, 김해의 대흥알엔티 노동자 29명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달아 ‘직업성 질병’(독성간염)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사건을 수사했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엔티는 위 기간동안 ‘유성케미칼’의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대한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조치를 완비하지 않아 노동자 29명의 독성간염을 초래한 혐의를 받았다. 독성간염은 약물과 화학물질 등으로 발생하는 간손상을 일컫는다.

중대 재해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 대한민국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자의적 해석, 정부 여당 사업주 눈치 보기 끝판!
- 사업주는 과거로 회귀할 것. 오로지 사업주를 위한 판단!
- 대흥알앤티 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처분 규탄한다!!
- 법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검찰 규탄한다!

대흥알앤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무혐의처분을 두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대흥알앤티 안전보건위원회는 사실상 파행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다”며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27일 성명을 냈다.

경남본부는 “형식적 산보위가 개최될 뿐 노동자 측 산보위 활동을 위한 그 어떤 시간도 보장하지 않고, 논의만 하고 결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결정된 내용을 노동자 측을 무시하고 집행해 버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경남본부는 또, “심지어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서 ‘우리 지청은 사업장(대흥알앤티)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산보위에서 심의 의결하여 안전보건관리 규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검토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공문을 보낼 정도”라며 고용노동부 양산지청도 대흥알앤티 사업장이 노동자 의견 청취 및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법률이 정한 절차와 내용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준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주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전인)2022년 1월 27일 체계로 돌아갈 준비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의 꿈은 정말 꿈이 됐다”고 분노했다.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